

## 제15장 특명성

### 제15.1조 정의

이) 장의 목적상,

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,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.

- 가.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,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, 또는
- 나.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

### 제15.2조 공표

1.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, 규정,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, 이해관계인이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.

2. 가능한 범위에서, 각 당사국은

- 가.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.  
그리고

- 나. 적절한 경우,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.
3.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<sup>1</sup>에 대하여,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단일의 공식 저널<sup>2</sup>에 그러한 법과 규정을 공표하도록 노력하고 추가적인 경로를 통한 이들의 배포를 장려한다.
4. 제2항가호에 따라 공표되고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자국의 중앙정부가 제안하는 법안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안에 대하여,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제안된 법과 규정을 공중의견제출 마감일부터 40일 이상 전에 공표하도록 노력한다.

### 제15.3조 정보의 제공

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,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제15.2조에 언급된 모든 실제 조치와 제안된 조치를 이전에 통보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,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질의에 응답한다.

### 제15.4조 행정절차

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, 규정,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,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,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15.2조에

---

1 제3항 및 제4항의 목적상, “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” 이란 한국의 경우 대통령령,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고, 말레이시아의 경우 법령보충서 가 및 법령보충서 나로 구성된 보조입법을 말한다.

2 제3항과 제4항의 목적상, “단일의 공식 저널” 이란, 대한민국의 경우, 관보를 말한다.

언급된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서 다음을 보장한다.

- 가.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,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,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를 절차가 개시될 때 제공할 것
- 나. 시간, 절차의 성격, 그리고 공익이 허용할 때,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모든 최종 행정처분 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할 것, 그리고
- 다. 자국의 절차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를 것

### 제15.5조

#### 재심사 및 불복청구

1.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최종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사를 목적으로,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, 사법, 준사법,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.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는 공평하고,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,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.

2.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.

- 가.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, 그리고
- 나.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, 또는 자국의 법과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 행정 당국이 취합한 기록에 기초한 결정

3. 각 당사국은,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적인 재심사를 조건으로,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이 제2항나호에 언급된 모든 결정을 이행하고, 그러한 결정이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.

### 제15.6조

#### 반부패 및 투명성 증진에 관한 협력

1.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하여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자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.

2. 양 당사국은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 뇌물 수수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자국의 결의를 확인한다.

3. 양 당사국은 모범 행정 행위의 원칙에 동의하며, 각국의 규정에 대한 정보 및 우수 관행의 교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, 규제의 질과 성과를 증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한다.